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77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이광희·박희승·허성무

민형배 · 김문수 · 서미화

이재강 • 김우영 • 박해철

이상식 • 양문석 • 임미애

조계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을 할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 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이 있음.

하지만, 같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방법 이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도 국민의 손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의 청구권자· 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 참 여 확대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와 참여 확대를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민소환"은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직접 해임하는 것을 말한다.
 - 2. "국민소환투표"란 국민소환을 하기 위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행하여지는 투표를 말한다.
 - 3. "국민소환투표인"이란 국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 소환 투표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을 말한다.
 - 4. "국민소환투표대상자"란 이 법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을 말한다.
 - 5. "국민소환투표운동"이란 국민소환투표대상자를 소환하게 하거나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행위는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나. 국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 6. "관할선거관리위원회"란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를 말한다.
- 제3조(국민소환투표의 대상)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 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한다.
- 제4조(소환사유)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할 수 있다. 단, 각 호에 도 불구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제5조(소환대상의 제외) ① 국회의원은 임기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소환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은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소환되지 아니한다.
- 제6조(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 국민소환투표의 사무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②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부터 제

-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로, "선거관리"는 "국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 무"는 각각 "국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 제7조(국민소환투표인) ① 국민소환투표인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
 - ② 국민소환투표인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 구에 있는 국민소환투표인(이하 "지역구국민소환투표인"이라 한다) 이 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국민소환투표인 가운데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이하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이라한다)이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의 수는 국민소환투표인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로 한다.
 - ⑤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의 선정 방법·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할 때는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제16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발의일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 국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인명

- 부 작성 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확정과 제2항에 따른 부재자신고의 절차,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 선거법」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국민소환투표의 보장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소환투표인이 국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②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국민소환투표 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 야 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 방송·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참여와 투표 방법,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에 필요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소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 제11조(국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국민소환투표인은 국민소환투표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 ②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과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 다.

-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 인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과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 로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국민소환투표인의 총수는 국민소환투표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날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국민소환투표인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2조(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요청 활동) ① 국민소환투표인 이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청구인대 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환청구인대표자증 명서(이하 "대표자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위원장은 소환청구인대표자가 국민소환투표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면으로 서명요청 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라 한다)은 제2항 에 따라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서 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라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 ④ 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국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서명요청권을 수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소환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명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하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 제13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①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해당 국회의원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고 그 기간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 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1. 국민소환투표인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 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5. 해당 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인 경우 그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한다),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 6. 해당 국회의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인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해당 국회의원보다 후순위에 올라있는 사람(이하 "후순위후보자"라 한다), 후순위후보자의 가족(배우자, 후순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순위후보자의 직계비속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 ③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국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수 없다.

- 제14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제출·심사·확인 등) ① 소환청구인대표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0 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청구서(이하 "소환청구서"라 한다)와 소환청 구인서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무효로 한다.
 - 1. 국민소환투표인이 아닌 사람의 서명
 -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3.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아닌 사람의 요청에 따라 행하여진 서명
 - 4. 동일인이 동인한 사안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 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 7. 강요 ·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서명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반되는 서명
 - ③ 그 밖에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국민소환투표 청구의 각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 대표자가 제출한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1. 제5조에 따라 소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주민소환을 청구한 경우
 -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심사·확인 과정을 거쳐 유효한 것으로 판명된 서명의 총수가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 건에 미달되는 경우
 - 3. 소환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경 과하여 제출된 경우

제3장 국민소환투표위 실시 등

- 제16조(국민소환투표의 발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해당 국회 의원 및 국회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지와 소명서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소 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 여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 제17조(국민소환투표의 실시) 국민소환투표일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해당 국회의원이 사직,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소명기회의 보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국회의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명요청을 받은 국회의원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할때에는 제2항에 따른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국민소환투표의 방식과 절차) ①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② 국민소환투표인은 주민등록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투표를 한다.

- ③ 국민소환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따른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를 한다.
- ④ 국민소환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 ⑤ 국민소환투표 및 개표 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⑥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그 밖에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개표구의 설치, 투표·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의 예에 따르고, 국민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보궐선거등의 투표시간을 준용한다.
- 제20조(국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①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는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제21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국 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제22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9조・제79조・제82조(제1항의 단서를

제외한다) · 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에 따른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해당 국회의원"으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사항"과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은 각각 "국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다만, 국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제22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국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하니된다.
 - ② 국민소환투표운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1. 「공직선거법」 제80조에서 제한한 연설금지장소에서 연설하는 행위
 -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서 제한한 전자우편을 통한 국민소환 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3.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제한한 확성장치 및 자동차를 사용하는 행위
 - 4. 「공직선거법」 제102조에서 제한한 야간에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5.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제한한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 6. 국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③ 지위를 이용한 국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 제24조(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 투표안의 내용,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및 국민소환투표의 절차 등을 게재한 국민소환투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작성방법·배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위법한 국민소환투표운동에 대한 중지·경고 등) ① 관할선거 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 및 이 법의 위임에 따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4장 국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 제26조(권한행사의 정지 등) ①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 27조제3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역구국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 제27조(국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이 하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② 전체 국민소환투표자의 수가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및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 한 때에도 이와 같다.
- 제28조(국민소환투표의 효력)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 제29조(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 ①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이의가 있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국민소환투표권자(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사항을 제외하고는「공직선거법」제15장 중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 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 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31조(보궐선거 실시의 제한 등) ① 제29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의 결과 국민소환투표의 무효가 결정되어 재투표가 실시

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재투표 및 보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3장(재선거와 보궐선거) 중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국민소환투표의 비용 부담) ① 국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 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소환청구인대표 자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국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 용은 각자 부담한다.
 - 1. 국민소환투표의 준비 · 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 2. 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국민소환투 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 3.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경비
 - 4. 국민소환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사 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 한 경비
 - ② 국가는 예비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국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5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경비의 산출기준·납부절차·납부방법·집행·회계 및 반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주민투표법」의 준용

- 제33조(「주민투표법」의 준용) ① 국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제4조·제17조·제19조·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관리기관"은 "국민소환투표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국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사무"는 "국민소환투표사무"로, "주민투표안"은 "국민소환투표안"으로 본다.
 - ② 「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함에 있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하여야 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시·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르고, 국민 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보궐선거 등의 시간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국민소환투표지원단)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소환투표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소환투 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개시일부터 국민소환투표 일까지 해당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을 둔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소환투표 부정을 감 시하고 공정국민소환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중

- 에 사이버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선거지원단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으로, "선거운동"은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제35조(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 및 제44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 제36조(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는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 및 제44조의 과태료에 해당하 는 위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7조(벌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 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국민소환투표 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 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 2. 국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 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노인단 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 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 3. 국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 향우회·계모임, 그 밖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사람
 - 5. 국민소환투표인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

- 6.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국민소환투표지를 제거・변 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
- 7.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 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
- 8.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국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사람
- 9.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사람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 하여 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 무를 유기한 사람
-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 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국민소환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
 - 3. 허위의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한 사람

- 4.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
- 2.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한 사 람
- 제40조(벌칙) ①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사람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국민소 환투표운동을 한 사람
 - 3. 제23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
- 제42조(벌칙)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기구를 설치한 사람
-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 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사람
- 4.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제43조(이익의 몰수) 제3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44조(과태료)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제 출의 의무를 게을리 한 사람

- 2. 학교·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 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
- 3.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貼付)한 국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 오손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국민소환투표사무원·부재자국민소환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 거나 게을리 한 사람
- 2.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 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사람
- 3.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출 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